

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9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의 재위탁 절차 추진
- 나.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들에게 완전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
-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(5년)
- 위탁유형 : 사무형 민간위탁
- 소요예산 : 527,936천원('25년 기준)
(민간위탁금 361,936천원, 민간위탁사업비 166,000천원)
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나. 위탁 사무내용

-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
- 이용자 상담, 평가, 사용훈련,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
- 보조기기의 보급, 대여, 전시체험장 운영
-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
- 보조기기 맞춤 제작, 개조, 수리 서비스
-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
-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자원 확보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

다. 추진근거
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1항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」('23. 6.)

라. 추진 필요성

-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운영경험 필요
-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지역보조기기센터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이향림 (☎ 2133-7464)